

춘천지방법원 2022. 7. 20 선고 2022가단305 판결 [건물철거 및 토지인도]

전 문

원 고 A

피 고 B

변 론 종 결 2022. 7. 6.

판 결 선 고 2022. 7. 20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및 별지도면 표시 건물을 철거하고 별지목록 기재 토지를 인도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3.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적용법조

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(공시송달에 의한 판결)

판사 정수영

별지